

지자체-공공기관과 손잡고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한다

- 8.1~8.30까지 30일간 151개 현장에서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단속
- 100일 집중단속 기간 60일간 총 273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 중
- 100일 집중단속 종료 후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상시단속체계 가동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및 민당정 후속대책('23.5)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 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당부했다.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책임자	팀 장	조숙현 (044-201-3518)
	공정건설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신기표 (044-201-3572)

참고 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 결과(5.23~7.21)

- (단속기간) '23. 5. 23 ~ 7. 21 < 60일 >
- (단속현장) 총 292개 현장 < 진행률 57.5% > * 총 508개 현장 단속 예정
- (적발현장) 108개 현장 < 적발률 37.0% >
- (적발업체) 총 146개社 < 원청 98개社, 하청 48개社 >
- (적발건수) 총 183건
 - ①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125건 < 전체 적발 건수의 68.3% >
 - * 건설업 무등록업체 83개社, 해당 공종 무자격 업체 44개社
 - ② 하청이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 58건

<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5.23~7.21) >

구분	누계('23.5.23~7.21)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단속 현장 수	292개	84개	19개	55개	53개	81개
적발 현장 수	108개	32개	6개	29개	12개	29개
불법하도급 업체 수 (원청/하청)	146개 (98/48)	42개 (18/24)	12개 (12/-)	42개 (35/7)	16개 (11/5)	34개 (22/12)
불법하도급 건수	183건	75건	6건	42건	16건	44건
무자격자 하도급	125건	44건	6건	35건	11건	29건
무등록 시공업체 수 ¹⁾	83개	37개	5개	19개	7개	15개
무자격 시공업체 수 ²⁾	44개	8개	2개	16개	3개	15개
재하도급 (중복 ³⁾)	58건 (36건)	31건 (24건)	-	7건 (2건)	5건 (3건)	15건 (7)

- 1) 무자격자 하도급의 수급인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2) 무자격자 하도급의 수급인으로 해당 공종이 아닌 공종을 등록한 자
- 3) 하청이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①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 하도급을 준 업체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해당 공종의 자격없이 하도급을 받은 자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② 재하도급

- 하도급을 준 업체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① 아파트 차수공사 불법재하도급(수도권)

- 하청인 A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 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

* 지반을 뚫고 시멘트(주입재) 등을 주입하여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

⇒ A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②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불법하도급(충청권)

- 원청인 C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하여 자격이 없는 D(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③ 주차장 포장공사 불법하도급(전라권)

- 원청인 E는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인 F(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등록)에게 주차장 포장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 E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F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④ 건축물 판넬공사 불법재하도급(경상권)

- 하청인 G는 자재 납품업체인 H(건설업 미등록)에게 변전소 건물 외벽 판넬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

⇒ G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H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추진배경**

- 8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 공공 발주기관과 인허가청 담당자가 참여토록 하여, 집중단속 종료 후 상시단속체계* 구축 추진

* 의심업체 추출(조기경보시스템) → 지방청·발주자 및 인허가청 합동단속 → 처분요구

□ **합동단속 개요**

- (기간) '23. 8. 1.(화) ~ 8. 30.(수)
- (대상공사) 전체 508개 중 151개(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 (참여기관)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

< 8월 합동단속 참여기관 현황 >

구 분	공공공사(공공발주자)		민간공사(인허가청)	
	현장수	기 관 명 (현장수)	현장수	기관명(현장수)
서울청	10	국방부(6), 하남시(1), 한국환경공단(2), 한국자산관리공사(1)	47	서울시(18) 경기도(27) 인천시(2)
원주청	4	국방부(2), 영월군(1), 한국환경공단(1)	-	-
대전청	14	충청북도(1),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1), 음성군(1), 천안시(1), 청양군(1), 홍성군(1), 괴산군(1), 서천군(1), 한국고용보험정보원(1), 한국농어촌공사(1), LH공사(2), 한국동서발전(1), 국가철도공단(1)	10	충청남도(4) 충청북도(5) 세종시(1)
익산청	11	서귀포시(1), 국방부(1), 여수시(1), 한국농어촌공사(1), 광주지방기상청(1), 해남군(1), 한국전력공사(1), 광양시(1), 한국공항공사(1), 국가철도공단(1), 제주도(1)	26	광주광역시(5) 전라북도(1) 전라남도(14) 제주도(6)
부산청	23	국방부(3), 포항항만청(1), 울산시(1), 경상남도(1), 경상북도교육청(1), 대구동부교육지원청(1), 사천교육지원청(1), 사천시(1), 고령군(2), 구미시(2), 군위군(1), 안동시(1), 성주군(1), 영주시(1), 김천시(1), 합천군(1), 한국도로공사(1), LH(2)	6	경상남도(5) 경상북도(1)